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12. 20(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11. 21.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3. 11. 22.

라. 상정일자 : 2013. 12. 2.(제21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 및 지급액을 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인천시에서는 이미 2013년 7월29일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인천시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한 특수지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수준의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서해5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필요함. 교원은 못받는 것인지?
⇒ 교원도 받아야 하나, 국가공무원은 교육부와 안행부에 건의 하였으나, 경찰청, 기상대 직원 등 형평성으로 고민중이라고 함.
- 서해5도를 제외하고 인천 내 지리적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은 바,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같이 검토 바람
⇒ (답변) 검토하겠음.

5. 토 론 요 지

- 찬성 : 김영태, 허회숙, 노현경, 구제용, 권용오, 배상만, 이수영 위원
- 반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